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2005. 9. 29.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
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회
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
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
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
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단체)

차례

I. 총론

1.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경과 / 1
2.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진단 / 2
3.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4
4. 인권 NAP 체계에 대한 대안 / 4
5. 종합의견 / 7

II. 각론

II-1. 'II.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 / 8

1. 장애인 / 8
2. 비정규직 근로자 / 9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 9
4. 여성 / 11
5. 아동·청소년 / 12
6. 노인(내용 없음) / 14
7. 성적 소수자 / 15
8. 병력자(에이즈, Hansen) / 17
9. 군인 / 18
10. 추가되어야 할 취약계층 / 19

II-2. 'III.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의견 / 21

1.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 21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 28
3.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협력 체계 구축 / 40
4. III부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과거정산 / 42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2005. 9. 인권단체연석회의

I. 총론

1.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경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국가가 스스로 수립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8년 2차 한국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환영함.
-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2004년 5월 전국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2004년 6월 '제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2005년 3월에는 「2004 인권운동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 인권 NAP 는 한 국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의 수립을 위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함. 이에 인권회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고, 소속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 인권회의는 인권 NAP 권고안의 작성에서 향후 5년 간(2007~11년)의 국가의 인권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기관이 이에 부응하여 인권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인권 증진에 방향과 그에 맞는 방침이 있어야 하며, 운동적 전략에 입각하여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회의의 이런 의견을 경청하여 권고안 수립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 협력해야 하며, 그럴 경우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된 권고안을 기준을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의 인권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임.
- 이 의견서 작성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소속단체만이 아니라 비소속단체까지 포괄하고 있는 영역별 네트워크인 인권교육네트워크¹⁾, 사회권전략팀과, 정보인권활동가모임²⁾,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씨와 성은미 씨 등의 인권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어 참여하였음. 인권회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인권회의는 소속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인권교육네트워크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원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홍의표 씨로 구성되어 있음.
 2) 사회권전략팀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3)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하고 이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준 동지들께 감사함.

2.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진단

2-1. 총평

-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어 있음. 권위주의 국가권력이 해체되어 시민·정치 영역에서 철저히 민주주의는 상당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독재 시기 권위주의 권력에 편승한 보수세력이 정치와 행정, 사법부 등을 장악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 방해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반해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강화로 말미암아 빈곤층이 증대하면서 일부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에도 사회권 영역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어 위기 상황을 낳고 있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거기에 미국의 패권적 지배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임.
- 현재의 정치권력은 정치 영역에서 자유주의적 경향성을 보이면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와 독재권력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의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에 보수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으며 곳곳에서 국가안보론과 국가우선론에 의해 인권적 개혁은 이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음. 현재 사법권력의 재편성을 위한 개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 결과는 인권적 지형을 상당 부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 확실함. 이와는 달리 경제적 개혁은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시장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생존권적 위기에 빠진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나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분배정책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정치권력이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부를 장악한 일부 재벌들이 경제권력화하는 새로운 양상을 낳으면서 '법의 지배'의 원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인권 행위자는 인권운동단체들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간 인권운동의 위상은 상대화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각 기구들의 인식의 편차와 인권 수호, 인권증진의 방향 설정도 혼란을 빚고 있음. 과거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국가기관들이 인권을 앞세우면서 변신을 시도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존한 폭력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실내용에서는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2-2. 사회권

-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고, 빈곤층이 전체인구의 15%인 7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해 필수공공재 공급에 제한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기반한 세계화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석량·의료·교육의 개방화·민영화는 사회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음.
- 그럼에도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가난하다는 편견, 북

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현재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결국 이런 '통념'이 빈곤을 '구조'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로 인식하게 함. 그렇다보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빈곤 극복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에는 생존권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제한한다는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노동자 배제의 민주주의", 민중 배제의 개혁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그나마 미약한 인권보장체계로부터 완전히 이탈, 실적 노숙자 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한 채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을 맞게 됨.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질망적 상황을 낳고 있으며, 생계형 자살자가 급증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 불안정노동의 증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미흡, 빈곤의 심화·확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

2-3. 자유권

- 호주제, 사회보호법 등 일련의 인권침해악법들이 폐지된 점은 긍정적인 점. 그러나 아직까지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억압적인 행정관행, 형사소송법 등 생명권, 양심·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에 대한 개폐논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존속하는 상황임.
- 자유권 영역에서 세롭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역은 정보인권 분야임. 지난해 국가와 자본은 DNA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축적 작업, NEIS 등에서 보이는 개인정보의 집적, CCTV의 설치의 확대,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작업장에서 감시 강화, 전자정부 추진 등 매우 광범한 범위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최근에는 국정원의 도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권력이 최근까지 국민들의 일상사까지 감시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 국가권력의 민주적 제편은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과거 독재권력이 정권안보를 만들어 놓은 각종 비밀경찰기구인 공안기구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 국가안보론에 기초한 이들 공안기구들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민주주의의 진전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체 내지는 민주적 제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구들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들에 의해서 인권을 무시한 국가안보론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독교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며, 표현의 자유 영역은 종종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

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개악된 집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상황임.

-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적 보호장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아직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차별적인 수사와 재판의 관행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감수성의 개발과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요청됨.
- 참정권은 왜곡된 보수정당체제와 신입 정치세력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의 높음과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의 국민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 구조가 성립되기 힘들며, 아울러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진출은 어려운 상황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의 논의는 실종되어 있음.
-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관계법 제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음. 새로운 신분관계법의 제정 방향은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금지 원칙이 지켜지는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가 되어야 함.

3.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인 실현의 의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예산, 교육·홍보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 주관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른 행정부처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이면시도, 전략적 판단을 갖고 접근해야 함.
- 그러나 이렇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으로 제출한 권고안에는 향후 5년 동안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적 전략이 부재함. 결국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인권현황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데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인권현황과 과제'는 사실상 현황을 짚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 그렇다보니 이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켜 발전시켜나갈지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부재한 것은 당연함.
- 권고안이 분야별(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로 영역을 나누는 것 외에도 총론적인 형식의 내용이 빠져있고 각론의 과제도 현황에 대한 판단에서 도출되는 것보다는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음. 또한 전체적으로 권고안의 항목마다 구성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목표나 필요성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과제들이 핵심 추진과제에는 빠져있고,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던지가 드러나지 않음. 또한 인권 목록이 수평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 향후 5년간 증진시켜 나갈 핵심추진 과제가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음.
- 이번의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서는 국가 분야 중 행정부의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음.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도 있어야 함.

4. 인권 NAP 체계에 대한 대안

4.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방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국가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도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그래야만 이러한 권고안에 기초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행정부처가 구체적인 방향성 아래 수립, 집행해낼 수 있음. 또 앞으로 권고를 모니터링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대상 기간 수정안 표제에 정부의 집행 일자를 예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2007-2011) 명기하였음. 권고안(초안)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향후 7년 이상에 걸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적시성에 의문이 있음. 안은 현재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권고안이 없어도 충분히 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또 안에는 권고안을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실제 3-5년에 걸친 사업을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사업 범위”에 해당함. 이렇게 볼 때 왜 중기적인 사업 범위로 설정했는지 대해 더 엄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만일 이렇게 볼 때 인권발전을 위한 전략이 향후 1-2년 내에 대책이 수립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빼고 중기에 해당한 영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권고 대상: 권고안(초안)에 따르면, 권고 대상을 포괄적인 정부라고 하고 집행계획은 결국 정부 내의 조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등 및 자유권과 사회권 별로 관련 원칙과 인권 개선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권고 대상 범위가 축소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영연방 국가의 유사기관과는 달리 행정체제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국회와 법원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나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권고 대상 기관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및 각 헌법 기관도 포함되어야 함. 적어도 I장의 추진전략 부분에서라도 포함되어야 함.
- 인권 영역 분류 체계: 권고안(초안)에는 인권의 사회적 약자 등 보호, 자유권 분야, 사회권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그리고 인권교육과 국내협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잡고 있음.
 - 인권교육을 국내협력과 통합해서 다루는 것은 유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즉 국가의 인권교육 실시는 그 자체가 의무이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게 유엔의 입장임.
 - 권고안(초안)처럼 인권교육을 국내협력과 같은 방법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따라서 인권교육과 국내협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하되, 인권교육 부문에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권리며, 인권교육의 실시는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해야 함.
 - 자유권과 사회권 내부의 인권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순히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틀을 고정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명권 등을 자유권으로 볼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대전제의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자유권, 사회권으로 나누고 인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즉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적시해야 함. 특히 불가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상호의존성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II장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함. II의 서론 부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III장 3-7에 제시된 내용은 재정정책의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단체

에 대한 보조를 시급 확대와 민간영역의 활동 범위를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개입의 역기능 즉 시민사회의 비관기능 약화 또는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음. 직접적인 재원 지원보다는 국가정책 특히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 보장과 집행에 대한 감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는바 임.
 - ① 국가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가적 의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함.
 - ② 구체적 현실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기초해야 함.
 - ③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④ 지난 10여 년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국제인권규범(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함. 지난 10여 년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 전달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왔음. 따라서 이들 권고사항을 시급히 이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야 함. 또,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해야 함.
 - ⑤ 인권에 반하는 법률, 제도, 관행의 폐지 및 개정을 해야 함.
 - ⑥ 사회적 소수자(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집단)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향유의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⑦ 과거 인권침해국가기구(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의 민주적 재편을 중심으로 두고 추진되어야 함.
 - ⑧ 사회필수서비스인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는 방식으로의 사회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⑨ 5년 동안 추진할 핵심이행과제가 실효성 있고 명료화해야 함.

4.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분야 및 구조

- 분야: 권고안에서는 ‘II.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중 ‘국내거주 북 출신 이주자’ ‘III.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 중 과거청산, 평화권, 인권침해기구의 민주적 재편,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이들은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야임에도 무시되고 있으므로 이후 본격적인 권고안 작성에서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제시되어야 함.
- 구조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안에서 [목표, 필요성, 국제 및 국내기준, 국가정책방향, 핵심추진과제]로 정리되고 있음. ‘필요성’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필요성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음.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고 어느 권리도 국가의 인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음. 따라서 ‘현실 진단’이라는 개념으로 추진 과제의 요청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핵심 추진 과제를 제안함에 있어 구체적 정책 내용은 해당 부처의 자체 입안에 맡긴다 하

더라도, 방향성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함. 그래야만 방향성 내에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음.

- 모든 세부 항목의 핵심 추진 과제에는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일정표) 제시'가 포함되어야 함.

- 인권회의는 바뀌어야 할 대안적 구조로 다음을 제시함.

① 해당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 제시(ex.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등 권리 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

② 현실 진단

③ 관련한 주요 국제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국제적 인권 보장 흐름

④ 주요 정책 방향

⑤ 향후 5년간 핵심 추진 과제

4.3. 권고안(초안)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의 문제

○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자(이하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으로 표현된 부분을 "사회적 약자 등"으로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이주노동자"로, "아동·청소년"은 "어린이·청소년" 또는 그냥 "아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신장" : 수정안 곳곳에 인권신장 또는 권리신장이라는 용어가 있음. "신장"은 양적인 개념으로 "extension or extending"을 의미하는 함. 따라서 권리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장이라고 써야 할 곳이 분명 있지만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함. 그런데 국제인권 문헌에서 말하는 "promotion 또는 promoting"의 의미는 양과 질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growth와 development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임. 다만 순수하게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면 "신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안 전반에 걸쳐서 엄격히 구분해야함. 신장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며, 수정안의 거의 대부분은 "증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 보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II부 4.5. 인권취약여성의 특별보호 및 권리신장(수정안 52쪽 하단): 위 항목은 체제상 맞지 않음. "II.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하에 "4. 여성"의 항목의 하위 개념에서 "인권취약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II장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인데 여기에 다시 취약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음. 즉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인권보호는 여성 총체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시정 및 극복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성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표현하는 것임. 수정안의 표현대로라면 여성 가운데 취약집단이 더 있다는 표현으로 이것은 역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4. 여성"의 항목이 애매해짐. 따라서 이중적인 인권침해 잠재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별보호라는 용어도 일반적인 차별을 극복이라는 인권적인 근거와 전략적이고 핵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목표를 한꺼번에 제시한 것인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전략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권취약여성의 특별보호 및 권리신장"은 "이중 침해 노출 여성의 보호와 권리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

5. 종합의견

○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는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 위에서 통합적인 전략방향이 제시하지 못함.

○ 인권정책 방향 제시가 나열식으로 그치고 있어 원칙과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지 못함.

○ 인권영역 분류와 체계, 용어상의 문제 등이 보이고 있음.

○ 인권정책 방향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성을 변경해야 할 것임.

○ 각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서술하겠음.

II. 각론

1. 'II.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

1. 장애인

○ I부 3-1의 인권상황 정리에서도 '장애인등이등권보장법률'의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1-1. 서론' 서론에서도 다른 장애인 관련법은 열거하면서 가장 최근의 법 제정 과정은 제외되어 있어서 추가되어야 함.

○ '1-1. 서론'에서 문화 및 체육에 대한 향유 권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문화권, 건강권, 생활권의 영역). 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함을 이 부분에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1-2.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의 '국가정책 방향'에서 '독립생활'과 '자립생활'의 용어적 정의를 필요하며, 이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필요성' 부분에서 장애인 교육 차별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함. 또 각종 시험이나 평가에 있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별도의 평가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역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수방법이나 교구 등도 개발되어야 함.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평등이 보장될 수 있음.

○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국가정책 방향'에서 장애에 맞는 교수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에 함여야 함이 지적되어야 하고(이는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 교육은 통합과 분리를 병행하되 이에 대한 교육 대상자들의 충분한 의견 검토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 역시 확충되어야 함.

○ '1-4.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에서 편의증진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법 제정 이전의 시설에 대한 차후 판리가 미비하고 법 효력 발생 이후라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 '국가 정책 방향'에서 편의증진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한시적 명령이나 강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이 명기되어야 하며, 위반시 실질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이 포함되어야 함.

○ '1-6.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의 핵심 추진과제에 문화권 및 체육권의 보장이 필요함을 추가해야 하며, 장애로 인한 판단 및 물리적 방어에 있어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한 범죄나 차별에 대해 일정 정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장애인의 인격권(소비자 권리 등)과 자기결정권(경제권 등)에 대한 언급도 제시되어야 함.

2. 비정규직 근로자

* 용어 사용의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사용해야 함.

- 비정규직노동자를 단지 정규직과 비교하는 가운데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임.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의 문제만이 아닌 노동권의 전반적인 침해로 규정해야 함. '2-2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방지'에서 정책방향이 고용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해 사유제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함. '2-3 비정규직차별시정'에서 그 내용은 긍정적이나 비정규직이 노동권 침해를 단지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 노동권의 보장 맥락에서 다뤄져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임.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고 이는 비정규직노동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의 제한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권고안에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내하청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함.

<2-4.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장 중 2-3 노동권 목표2항목 관련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회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법·제도적 요인으로 법적으로 비정규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임. 둘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 등으로 인한 자발적 기여회피임. 첫 번째 요인은 이번 권고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가입대상자 확대, 사업장근로자로의 전환 등이 제안되어 있음.
- 그러나 두 번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에 따른 자발적 기여회피의 해결책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이기 때문에 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하지 않고 있음.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상황이 고용주의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전반적인 비정규노동자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임.
-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입을 회피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것임.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번 권고안에는 비정규노동자에게 기업연금(p109)을 전면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즉 전 NAP보고서에는 기업연금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퇴직금 등의 기업연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 기업수준의 상황을 무시한 것임. 대부분 정규직, 대기업노동자만이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고 있어 기업연금제는 노동자들간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음. 또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개별 기업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비정규노동자에게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 게다가 영국의 연금개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로의 전환은 이후 공공적인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현행 권고안이 비정규노동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임. 현재 비정규노동자에 포함되는 집단은 상당히 이질적임. 비정규노동자는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일용직부터 시작해 특수고용, 호출근로 등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건이 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비정규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기되어야 함.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체계에 포괄될 수 있는 비정규노동자 군이 존재하는가 하면, 사회보험을 아무리 확대해도 가입되기 어려운 비정규노동자 군이 존재하기 때문임.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괄되지 않고 있어 비정규노동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내어놓은 권고안이라 보기 어려움.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 외국인 근로자 부분

* 용어 사용의 문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임.

- 이주노동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과반이 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상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을 한국이 비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국제협약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국가가 준수하게끔 해야 함. 예로 '이주노동자협약' 제2부 권리의 비차별(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분,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의 권리들을 사회권규약의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등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항목들로 확대해야 함.
- '3-2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부분 중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관한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장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장 이동 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② 휴업, 폐업, 도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③ 입국 전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20% 이상을 계약 위반한 경우. 회사가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장 변경 횟수도 3년 동안 3회에 한해서 해당되며 ②와 ④ 항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 서만 1회 추가로 작업장 이동이 허용.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일상적 폭언, 상처가 나지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폭행, 성희롱, 장시간 노동 강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에서 고용허가제의 폐해 중 하나인 사업장 이동에 대한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은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준으로 재정의되어야 함.

○ '3-2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부분에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의 탄압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인권탄압으로 정리되어 제시되어야 함.

○ '3-2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호'의 핵심추진과제에 추가해야 할 항목

- 사업장 이동 조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 고용 안정 센터 직원의 직권에 의해서 사업장이 이동 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현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로 인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에도 사업주의 고용변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장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장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횟수에 제한 없이 3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1년 단위 계약약시 이주노동자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함. (현행법은 1년 후 사업주만 계약을 거부할 수 있음.)
-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문제를 지원하는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의 언어 지원 및 상담 체계 구축.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이주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자국어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 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함.
-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조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기간은 최장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52조)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63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태임)
-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두고 출입국과 외부의 법률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보호기간을 규정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초과하여 보호 구금할 수 없도록 조치.
- 마취총, 전자 충격기 등의 만인권적 계구 사용 금지.
- 탄속되어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보호 수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안내문 및 이의 신청서를 비치하고, 이의 신청 시 강제퇴거 정지.
-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보험, 기타 국비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하여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등은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 '3-4. 외국인 여성의 권리증진' 중 핵심추진과제에 추가할 부분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권을 보장하고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부여
-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권 등의 사회보장제도 보장

□ '난민' 부분

- 여성, 아동 난민 및 난민 인정 신청인, 구금상황에 처해 있는 난민인정 신청인 등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우 대책 마련
- 최근 난민 인정 신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바 난민 문제에 관한 인식 확대

4. 여성

-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증진"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호'의 측면으로,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줌.
- '4.3.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보장'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든 좀 더 사회구조적인 폭력과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빈곤의 구조가 있음을 지적해야 함.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사고"는 "성차별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여성 폭력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임. 그리고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복잡한 문제를 모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의 정리 상태로는 개념의 범위가 모호하고 함의된 개념인지 의문이 들게 됨.
- "여성장애인과 이주 여성"을 "취약여성"이라는 규정한 것(p51),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라고 표현하는 것 등은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폭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이 있음.
- 국내 및 국제 기준에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p53)은 그 법의 취지와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여성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4.5.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권리 신장(p54)에서 여성 장애인, 장애인 여성이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장애인인 "여선생" '여의사' 등 장애인을 기준에 두고 여성을 부차화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있음. 여성장애인은 기존 법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번엔 준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운동계에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한 핵심 추진 과제가 "출산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 형태에 따른 보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제시한 필요성,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출산과 보육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핵심

적인 과제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장애여성을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할 우려가 있음.

5. 아동·청소년

□ 전반적인 평가

○ 권리 주체의 이름 문제

권리 주체의 이름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 혹은 '어린이·청소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부문에 있어 주요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이때의 아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함께 일컫는 개념임. 따라서 아동으로 통일하거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병기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방향성 평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크게 △일반 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문화 △특별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NAP 권고안 초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부문을 크게 △양육과 보호 △기초보건과 복지서비스 △보육과 교육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실진단, 국제기준, 국가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권고안 초안이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를 누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물론 권고안 초안 중 시민·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간헐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예: '종교의 자유' 분야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 과제를 제시). 또 인권교육 부문에서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이라는 모호한 과제가 제시되어 있기도 함.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청소년 인권 분야의 과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됨. 게다가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정치적 권리는 학교에서만 침해되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안 초안은 대부분 학생과 관련하여서만 시민·정치적 권리 과제를 다루고 있을 뿐임(예: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종교자유 침해 문제, 어린이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은 전혀 건드리지 못함).

- 권고안 초안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호 대책에 대부분의 추진과제들이 집중되어 있음.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경우,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특별 추진 과제를 병행 제시하여야 함. 어린이·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청소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재구성하고 사회 인식도 제고하여야 함.

- 어린이·청소년 가운데 인권 취약집단인 소수자 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그 집단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 NAP 권고안 초안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가출청소년, 청소년노동자(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청소년 성소수자, 국제

결혼가정 자녀의 존재도 포함시켜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임.

○ 총론적 현실 진단 미흡

- 권고안 초안은 세부 분야별 현실진단은 내놓고 있으나,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총론적 현실진단은 내놓고 있지 않음. 단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교육과 집단 따돌림, 교내 폭력,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빈곤, 가정폭력, 차별 등은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균형 있는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정도의 진단만 내놓고 있음. 총론적 현실 진단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며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자가 되는 것인 만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권고안 초안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낮다는 점, 관련 정부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주요 잣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교육 책임이 개별 가족의 사적 부담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족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수준이 크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 어린이·청소년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등 전체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평가

○ <5-2 양육과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부분

- 제시된 과제들은 모두 필요한 과제들임. 그러나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를 넘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학대 문제를 위한 과제는 핵심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차별 문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이미 지적받은 바 있음.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대안가정'의 법적 권한 확보와 지원 확대뿐 아니라, 청소년 내부의 차이(성, 장애, 학대·폭력 경험 등)를 고려한 생활·이용시설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다수인 보호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로서 '대안가정'의 다양화, 이용시설의 다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지 않으면 안됨.

- 검사선의주의 개선, 치료형 보호서비스 개발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그러나 이를 넘어 소년사법절차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소년보호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보조인 제도 전면 확대 등 '소년사법절차의 전반적 손질'을 정책 과제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5-3 기초보건·복지 서비스> 부분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는 전무하다시피 함. 예를 들어 권고안 초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 확대를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학교급식의 무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이는 권고안 초안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잔여적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가용 자원에 한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결식아동 등 취약집단을 우선 지원하

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 무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과제는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 'HIV 감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서술 방식이 청소년의 성 경험을 HIV 감염에 대한 공포를 통해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HIV 감염 예방 프로그램에서 '성적 접촉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 데 반해, 청소년 대상 HIV 감염 예방 프로그램은 성적 접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청소년의 성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아가 성적 접촉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HIV 감염을 결코 예방할 수 없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될 수 없음. 따라서 제안하는 정책과제의 내용이 '성적 접촉'의 위험성을 홍보하려는 것인지, 'HIV 감염 예방'인지를 분명히 하여 서술해야 할 것임.

- 장애 아동의 경우에 가구특성별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지적되어야 함.

○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부문

- 어린이·청소년 교육권의 현실 진단에서는 '입시 위주 학교교육'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실종되어 있음. 학교교육의 목표에 대한 전면 재수정,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입시정책의 전환 등이 제시되어야 함.

-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바대로, 중등교육의 무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취약률이 높다고는 해도 교육의 사부담 체계가 심화됨으로써 교육 불평등 문제도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핵심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 과제는 NAP 권고안 조안 중 '교육권' 항목에서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5.5 아동의 참여권 증진> 부문

-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핵심 추진과제에서는 학교운영과 부모 이혼시의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은 가정, 학교, 사회, 정치 전 분야에서 강조되어야 할 과제임. 따라서 입양이나 시설 입소 과정에서의 의사 존중,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방안의 확대, 선거연령의 추가 인화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6. 노인(내용 없음)

7. 성적 소수자

○ "7.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차별환경 정비"에 있어서의 문제점

- 잘못된 기술 혹은 개념 사용; 7.2의 필요성 중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정리 항목에서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이 객체는 부녀로, 범죄행위는 성교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강간 범죄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성전환자뿐만이 아님. 현재 형법상에는 남녀 간과 그리고 질 삽입 섹스만을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 간 성폭력은 범죄의 악랄함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강제추행'으로 정도에만 다루어짐. 이것은 법이 지나치게 이성애중심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객체를 부녀로 그리고 질 삽입 성교만으로 강간을 한정짓는 것은 성적소수자뿐 아니라 많은 이성애자 여성들과 남성들도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됨. 성전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성 전환자를 성별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성간이 아니라 동성 간으로 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그러므로 강간 범죄로부터 성 전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를 이성간 즉 남녀 간과 성기삽입중심으로만 다룬 것이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함. 동성 간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임.

- '핵심 추진과제'의 문제점; 5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두고 실시해야 하는,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음. 국가인권위가 성적소수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때와는 달리 상당히 핵심과제 자체의 수위를 낮추어서 작성한 인상이 강함.

① 인권교육 추진이 빠졌음. 서론 부분과 필요성에서 스스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열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소수자에 관한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이 빠져 있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인권교육 내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녹아들어가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핵심추진과제에 성적소수자에 관한 인권교육,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 환경과 교과과정 마련, 사회 각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체계수립 등이 핵심추진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인터넷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심의 및 검열 기준을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마련이 꼭 필요함.

- 혐오범죄, 아웃팅을 빙자한 협박범죄를 비롯해 현재 성적소수자에게 행해지는 많은 차별은 근본적으로 가해자가 아무리 부당한 차별을 가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으며 피해자만이 남몰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있음.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내 동성에 차별적 조항이 2004년도에 삭제된 이후에도 인터넷 각 포털 사이트들이 차별적 심의기준을 유지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2005년도에 들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차별적 심의기준은 인터넷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임. 이런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 그러므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절실히 필요함.

- 더군다나, 인터넷상의 차별에 있어 기준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인터넷상의 차별적 심의 기준만을 잡는 것은 지나치게 목표를 낮은 것임. 차별적 심의 기준은 온, 오프라인 상으로 넓혀야 하고 심의기준을 없애는 방향보다 부당한 기준을 작동시켰을 때마다 고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야별 등급분류 및 보류 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납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 및사회윤리침해기준'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③ 상담소 및 쉼터 설치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님. 역시 서론과 필요성 부분에서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과제 부분에서 상당히 뒤로 후퇴함. 성적소수자에 대한 상담소와 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라는 차원의 요구가 아님. 아직 한국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 국민인식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한번 실시해서 되는 일도 아니며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그리고 발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상담, 쉼터뿐만 아니라 교육, 성적소수자 단체지원, 상시적 모니터링, 정책개발 등을 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그러므로 이를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듯이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떼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임.

④ 성적소수자의 시설이용권, 참여권, 정보접근권 및 정보이용권 보다 더욱 시급한 권리 보장영역이 있음. 핵심과제에 성적소수자의 시설이용권, 참여권, 정보접근권 및 정보이용권 보장을 제시해놓았으나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만약 권리영역별로 정리 해서 보자면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권이나 참여권과 같은 구체화되지 않은 차별영역을 언급한 것은 다소 의아한 일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 보고서에서도 계획, 용역, 시설 등에서의 차별이라고 표현하였음). 그리고 정보접근권 및 정보이용권은 핵심과제 중 인터넷상의 매체심의 기준에서 차별조항을 없애라고 한 항목에서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므로 중복서술에 해당함.

· 보다 포괄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쓰지 않고 중복된 권리를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핵심을 피해가는 것으로 보임.

·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및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구성권 등 보다 분명한 자세로 성적소수자의 권리 문제에 접근하고 또한 핵심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⑤ 폐지, 개정해야 할 법령이 더 있음. 2005년 3월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기초현황조사'를 보면 반드시 폐지·개정되어야 할 법령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이 4개의 법령 등은 시급히 개정, 폐지되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핵심과제에 정확히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그 4개의 법령은 다음과 같음.

-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 및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 동성 간 성행위를 에이즈 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균혈액관리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및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개정
-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 개정
-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 및 사회윤리침해 기준"

○ "7-3.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잘못된 기술 혹은 개념 사용; 목표에서 "○ 성별변경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함"은 이상한 표현임. 성별변경을 하는 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성전환수술과 치료 등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라고 명확히 표기하거나 '호적상 성별변경에 있어 특별법 제정'이라고 해야 함.

8. 병력자(에이즈, 헌센)

□ 에이즈 관련

○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하나로 통일한다면 포괄적인 'HIV 감염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함. 감염인의 경우 비감염인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대부분의 에이즈 관련 차별사안들이 감염된 상태만을 두고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HIV 감염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함.

○ 서론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HIV 감염인(이하 감염인)의 경우 감염사실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배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구별 등이 두드러져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감염인들의 기본권 제한과 일상적 차별을 사회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나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의 에이즈 관리정책이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고착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인권침해 조항으로 강제검진, 취업제한, 실명신고체계, 전과대개 행위 금지규정, 출입국관리법의 강제출국 규정을 지적한 것은 적절함. 다만, 비밀누설금지조항의 유명무실화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역학조사조항 등 전반적인 관리정책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지적이 추가되어야 함.

○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함. 즉, 캠페인과 교육의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내용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 성교육 등에서 다루어지는 에이즈 관련 내용들에 대한 모범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핵심추진과제로 선정된 전문 의료기관의 성격이 모호하여 감염인들의 의료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불분명함. 현재 에이즈에 대한 전문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은 서울지역의 3개 대학병원인,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이 현재의 지역적 편향을 어느 정도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지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법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임. 다만, 실명신고체계 조항의 개선은 익명 검사·신고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법 규정 개선만으로 신고체계에서의 인권침해가 사라지

지는 않을 것임.

□ 한센 관련

- 한센 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과거 일본에 의해 시행된 한센인 강제격리 사업이 피해보상, 명예회복, 복지증진 등 일본의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보상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격리정책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2001, 5월에 취해졌다고는 하나 해방 이후에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강제 격리 정책이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한센인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야 할 것임.
- 한센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한센인 들의 현실에 근거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센인 특별법을 제정 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여 짐. 한센 인 정착촌의 생산품이 유통과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센인 특별법을 통해 한센인 들의 생산품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짐.
- 한센 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심하여 한센인 들이 대중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 우선적으로 국가가 한센 병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홍보내용에 한센인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임.
- 재개발 과정에서 한센 인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권이 침해당하니 국가입대주택사업에 입주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 필요 함.

9. 군인

- 전체적으로는 외국 사례에 대해 분량이 지나치게 많이 할애되어 있음. 외국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되긴 하지만, 9.2 와 9.3의 경우 외국사례의 분량이 국가정책방향이나, 핵심추진과제를 협천 것과 비슷한 분량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느낌을 줌.
- '9.2 군대내 폭력·가혹행위 및 자살 등 사망사고 예방'의 필요성 부분이 상당히 지엽적임. 단순히 군인의 신분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와 흔히 "병간 5대 금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 넣어야한다는 것 정도를 꼽은 것으로는 부족함. 필요성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함.
- 수사기록과 사건관련 자료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었다는 말은 군에서 반발하기에 딱 좋은 부분임. 그동안 여러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군래의 사망사고 처리과정을 보면, 사망사건 보고 후 가족들에게 통보까지의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야하지 않은 경우 현장의 보존도 많이 나아졌음. 사건기록의 공개는 가족들이 원하면 복사는 불가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함(부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기도 함). 오히려 군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같은 내무반 또는 동료들과 가족들 간의 1 대 1 면담 등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물론 사전에 사병들과 말을 맞춘 후일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아직도 자살로 처리되는 군내의 사망사고의 비율이 50%가 넘고, 그 자살의 원인조차 군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여전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음. 실제 자살사고의 경우, 고참 등의 가혹행위 사실이 수사결과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국내 및 국제 기준부분에서는 독일은 사병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보호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지만, 지나치게 독일의 예에 편중 되어 있다는 느낌. 또, 정책방향이 추상적임. "군대내의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이 근절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군내의 사망사고의 수를 줄이며, 각종 사건 사고시 그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판관법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통해 군의 인권 수준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는 정도는 기술되어야 함.
- 핵심추진과제 중에서 군 음부즈만 제도 도입 등 외부통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 또 군 생활 관련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서 더 잘 지켜지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함.
-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함을 지적해야 함. 교육의 대상은 간부들은 물론 사병들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되도록 군 생활 초기부터 진행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에 군 내부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채용하거나 양성하는 것이 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을 편안히 털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 폭발 가능성도 높음. 그래서 부대 내에 상담전문가가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상담내용의 비밀이 지켜져야 하고,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상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처리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추가해야 함.
- '9.3.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안, 작전말 회재천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군경찰법, 군형사소송법 개폐안 등을 검토하여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군내의 복무기간의 단축, 사병들의 훈련, 작업, 내무반 생활 등의 환경개선, 급여 등을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
- 군대내 종교의 자유 침해. 군대 내에서 3개 종단으로 한정되어서 종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는 전면 허용되어야 함. 개개인의 종교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군종장교 임용에서 3개 종단으로 한정된 차별도 시정되어야 함. 개인의 종교생활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신앙에 따른 종교생활이 가능한 인프라를 군대는 구축해야 함.
- 군대 내에서 양심에 따른 행동에 대한 보장. 군대 내에서 강제 징집된 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집중 거부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양심에 따른 거부에 대한 합법적인 대체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10. 추가되어야 할 취약계층

1) 북출신 이주자

- 소위 '탈북자'로 불리는 북출신 이주자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현재 초안에는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 이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난민이나 이니냐에 치우쳐 왔으나, 이러한 공방은 실질적 인권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음. 이들이 처해 있는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

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역사적으로 북에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변화해왔음. 과거 군사주의 정권 시절에는 주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남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들을 '귀순 용사'라 칭하며 정권홍보용으로 이용해왔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굶주림이 동기가 되어 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임. 즉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임.

- 하지만 이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북 출신 이주자는 북이라는 특수한 '출신지역'으로 인해 빚어지는 인권의 문제와 이주자라는 보편성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음. 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함. 현재 금전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주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함. 특히 정보기관의 일상적 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냉전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는 적극적 보호책이 필요함. 또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중계인들로 인해 빚어지는 사기, 지속적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함.

2)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고 시설에 약 9만 명, 미신고시설에 약 2만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상황이 지속적으로 폭로되어 사회 문제화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은 사회 적응 능력을 상실한 채 감금상태에 놓인 경우도 다수이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획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 개인의 다양성이 상실되어 감. 생활인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정책은 현재와 같은 시설 확충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탈시설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높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수익구조를 해체하여야 함.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설정책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들이 전면적으로 개폐되어야 함.
- 시설 생활인들은 지역사회에 통합된 주거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그룹홈 등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은 시설의 증가와 시설을 통한 수익을 노린 시설장들을 양산할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시설 수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퇴소를 원하는 생활인의 경우 지역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언제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고, 미신고 시설을 망라하여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합동의 전면적인 실사가 이

뤄져야 하며, 그를 통해 문제 시설은 과감히 폐쇄 조치하여야 함. 특히 대형시설은 분산, 소규모화하고 그룹홈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함.

2. 'III.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의견

1.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1. 서론

-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간의 인식의 편차가 매우 좁음. 이에 따라 NAP 권고안 초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지적은 이 영역에서만은 최소한도로 지적함.
-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의무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불이행과 무시 관행에 대한 지적이 빠져 있으며, 향후 헌법에 따라 유엔기구 등의 권고와 통보될 수 용하는 등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아직도 광범하게 존재하는 독재정권의 유산인 법제를 신속하게 민주주의적 원리에 맞게 재편하여야 하며, 아울러 반민주적 기구들의 개편과 축소, 폐지가 추진되어야 함이 지적되어야 함.

1-2.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

-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문제의식들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음. 아직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적인 사법개혁의 상을 특히 형사사법절차를 중심으로 밝힐 필요 있음. 그 내용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수사상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인권적인 입장의 제시가 필요함.
- 체포, 수사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발생하고 있는) 경찰, 검찰과 준사법권을 갖는 사법경찰관 등의 국가폭력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함.
- 필요성 부분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장애인을 명시해야 함.
- 국가정책방향에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수용방법과 수용생활 개선만을 언급하는 것은 미흡함. 석리와 수용만을 위한 형벌이 아니므로 수용자의 사회복귀까지를 확장,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적극 마련토록 하는 핵심과제가 선정되어야 함 것임.
- 핵심 추진과제 중
 -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인의 확대를 구체화. 언어소통이 어려운 피의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역과 수화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구체화
 - 특정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반인권범죄 부분은 둘로 별도로 구성해야 함.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입법 추진에 대해서 공소시효부작용조약 가입 추진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함.

- 다수인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
- 핵심 추진과제에 제심의 확대에 따른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 필요성, 국가의 과거 독재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의무,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적극 도입과 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사법개혁의 입장이 있어야 하며, 형소법에서 제심제도의 확대가 지적되어야 함. 인권침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필요성을 추가해야 함.
-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큰 의료나 과밀수용, 교육 등을 나열만 해놓고 있음. 이미 행정법 개정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필이나 서신수발의 내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의료(건강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수용자가 자기소송에 필요한 법률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보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시설이 필요함. 도서관의 확장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 가능해야 함.

1-3. 참정권

- '국내 및 국제 기준'의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예비후보자에게 일정기간 후원회 설치 허용' 부분과 '핵심 추진과제' 부분의 '공정선거를 위해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선거시기 인터넷 설명제 철회; 지난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시기 인터넷인론사 게시판에는 인터넷 설명제가 적용됨. 이는 표현물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서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위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선거 시기 인터넷 인론사의 게시판 등의 설명제를 의무화한 선거법 제82조의6은 삭제되어야 함.
-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네티즌의 정치 토론이나 패러디물이 선거법 저촉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제58조).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네티즌들의 단순한 비판이나 패러디물 등이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토론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선거 시기에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추진과제 중 추가할 사항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국민소환제도 언급되어야 하며, 국민발의제, 주민발의제도 도입할 것을 추가, 변경하여야 할 것임. 또 현재의 사법권력은 비선출권력이

선출권력을 통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이 선출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무소속 비정당인의 후보자로서 불평등한 관제를 감수해야 함. 이를 극복하여 공무담임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담은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
- 점차 등 장애에 맞는 선거 홍보방법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이 현실이므로 이를 극복하여 장애인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장애인 대리투표 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이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함.

1-4.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극적 조치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독과점을 막고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독립언론, 중소언론, 지역언론 등 언론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1-5. 정보인권

- '정보인권' 개념은 프라이버시권(혹은 자기정보통제권)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임.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투쟁 과정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어려운 개념 대신에 대중적으로는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이용되면서 간혹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NAP 권고안에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정보인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1-5 항의 실제 내용은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한 것이므로, 전체 제목도 '자기정보통제권'(혹은 좀 더 폭넓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옳음.
-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개혁 필요;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핵심추진과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문제의 개선'만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주민등록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의 일부분일 뿐임.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정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애초부터 국민의 거주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정권이 위협할 때마다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강화되어 왔음. 명목상 '주민등록'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그 업무의 전권이 이듬에 길게 지방자치단체에 전환 부여되어야 함. 또한 100여 개의 항목에 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직접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함. 전 국민에게 강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도 크기 때문에 점차

폐지되고 제 목적에 맞는 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만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 국가신분증의 강제적인 발급 역시 중단되어야 함.

- 전자정부, 국민정보 공동이용 제한 필요; 현행 전자정부법은 수집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도 행정정보로 취급하고 있으며, 부처간에 수집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그것을 취급하는 원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름. 즉, 개인정보가 아닌 행정정보는 부처간 공동이용과 국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민주성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방향임. 그러나 개인정보의 경우 공동 이용과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제한적 이용이 원칙이 되어야 함. 즉, 정부 부처 간에도 국민 정보의 수집 목적이 다르면 공동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별개로 수집, 이용, 폐기되어야 함. 만일 공동이용의 필요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동의나 법률에의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임.

- 노동자 감시에 대한 규제 필요;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을 구별하고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 사업장 내 노동자의 문제는 여타 민간 영역과 구별되어야 함. 왜냐하면 자기정보통제권은 통상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동의에 기반한 정보 수집, 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고용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즉,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임. 생산 현장에는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기밀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러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들 기술이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감시와 통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첨단 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노동자감시는 인터넷, 이메일 등 컴퓨터 업무의 감시·전화 송수신 감시 CCTV 감시 전자신분증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과 동선 감시 ERP(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밀착감시 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 감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 내에 도입된 감시 기술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용되어 노동조합의 약화나 붕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작업장 내의 노동자감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이 법률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1995) 등 국제적인 기준과 이미 노동자감시 규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해외 입법례를 다양하게 참고해서 노동자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노동관계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화도 고려해볼 만함.

- '정보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이 있으며, 이 중 일부분은 다른 인권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가. 정부의 내용 규제권한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년에 인터넷 상의 '불온'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심동윤)가 삭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과정에서 내용 규제 기준이 '불온'이 아니라 '불법' 여부를 따지도록 바뀌었을 뿐 정보통신부와 정통윤의 내용 규제 권한이 존속되어 오고 있음. 정통윤을 위한 결정 이후에도 자체적인 심의 규정으로 사실상 '불건전' 통신을 계속 규제하고 있음. 정통윤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정통윤을 정부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짐. 또한, 만일 정통윤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검열'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검열'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내용 규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함.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인터넷내용등급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종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인데,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등급제가 아닌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등급제는 표현에 대한 자의적인 제한과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 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등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과도한 내용 규제를 허용하고 있음.

다.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차단 기준과 목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마구 보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성애 인권단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 과도한 차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② 정보접근권

- 현재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체적·지역적·계층적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각종 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웹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웹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 등이 제정되어 있고, 사무기술 관련하여는 다기능 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강제력을 가진 의무규범이기보다는 촉진/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성 구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설계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등 정보사회의 인터넷 서비스가 특정한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공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매체층 여성 등의 특정집단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정보가 집중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불명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함.

1-6. 생명권

○ 핵심 추진과제 중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 폐지 내지 최소 집행을 위한 법률의 정비”는 통일시켜야 함.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출기세포부제 등을 통제하는 것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장애아 임신에 따른 낙태 허용의 문제, 도덕 및 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함.

1-7. 집회·시위의 자유

○ 전반적으로 ‘집회·시위 권리’가 아니라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집시법의 전면 개정 방향이나 폐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단계적인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으로 간다면 집시법을 전반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 있음(경찰의 합법적 권한만을 제한적으로 규정.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포괄적 금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함).

○ 이에 반해 인권위 NAP의 ‘핵심 추진과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핵심 추진 과제 중

- 집시법의 단계적인 폐지로 방향을 잡아야 함. 집시법이 폐지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하고,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집시법에서 특히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1-8. 양심·종교의 자유

○ ‘양심·종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유형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의 자유 침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 소수 종교에 대한 종교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이 있음.

○ 핵심추진 과제 중

- 뒤에 다시 언급이 되지만, 보안관찰법의 폐지 항목은 여기서도 언급되어야 함.
-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서 과거 공간기구가 존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공간기구는 축소, 재편되어야 하며, 국화와 국민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
- ‘병역거부’와 관련한 특별한 고려
 -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팽창하·심각한 인권현안임. 일체의 감옥에서부터 해방후 지급까지 10,000여명이 처벌받아왔고, 지금도 1,053명(2005년 7월 11일 현재)이 수감되어 있음. 시대의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감자가 8명(2005년 7월, 민가협통제)임에 비교해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해마다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

- 필요성; 필요성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2004년 2월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연기되어있는 상황. 때문에 521명의 수감자 외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에 모두 감옥에 수감되면서 현재에는 1000명이 넘어서고 있음. 병역거부자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기에 2004년의 상황은 적당하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이미 1년 전의 통계여서 이후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최근통계(1053명, 2005년 7월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통계)를 고려하였으면 함. 또한 병역거부의 문제는 단순히 현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는 사실도 병역거부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국가인권위에서 NAP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주요과제들(인권 옹호·신장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문화형성) 또한 과거의 인권침해사태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현재적인 해결을 할 때 가능한 것임.

- 국내 및 국제 기준; 1998년 ‘77호 결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각 2년 마다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도입에 대한 권고를 각 국에 하고 있고 최근 2004년 60차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기 요망. 또한 1998년의 결의 이후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각국정부에 병역거부에 관한 모범사례를 수집하는데, 2002년 결의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포함되었음을 상기하기 요망.

- 핵심추천과제; ‘적절한 대체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야 함. 이 부분들은 해석의 다양성이 가능하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복무의 도입이 병역거부자들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음. 때문에 NAP에서 구체적인 대체복무의 영역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대체복무의 영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기준은 제시해야 함. 그 기준은 평화의 신념을 보장하는 바, 철저히 비군사적인 영역에서의 비무장, 비전투의 대체복무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성격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그를 위해서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관은 국방부나 병무청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존재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또한 UN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바, 군부부중인 현역군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도 보장되어야 함.

1-9. 학문·예술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의 가능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해야 함

○ 핵심추진과제 중 추가되어야 할 사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을 모색. 학술 목적의 연구서나 간행물을 공공 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 비치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
- 상업 목적의 예술창작 행위가 아닌 비상업목적의 예술창작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 작가들의 생계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
-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 일반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공공도서관의 대대적인 확충 등.

1-10. 거주·이전의 자유

- 재개발 시 이주민(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정부사업(국책사업) 시 거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거주민들의 의사수렴 구조 및 정책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확립해야 함. 국가도 강제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함.
- 핵심추진과제 중 추가되어야 할 사항
 - 국정원의 신원조회권 폐지
 - 철거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철거와 토지의 강제수용은 금해야 함. 행정대집행법의 인권적 방향의 개정이 필요함.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2-1. 총평

- 목표의 설정은 사회권 관련 현실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짚은 후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 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하여 구체적 현실에서 사회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옴.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이며 권리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국제기준에 앞서는 기준이어야 함. 물론,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법,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사회권취약계층의 현실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조사(사회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결과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특히 최근 변화하는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증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충분하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초안이 다루고 있는 범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추진전략의 모호함으로 인해 권고안이 얼마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지는 의문임. 또한 사회권 관련하여 국가정책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막대한 지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활동에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하였음.

2-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함.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사회복지전담인력의 부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의해 구조적으로만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함. 즉,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임. 빈곤은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배제임을 감안할 때 빈곤율의 증가와 빈곤층의 생활권 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점진적 개선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임.

- 장애,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지면했을 때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써 권리주체별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해 보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노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만 수급권을 부여받음. 그러나 자활임금의 수준이 열악하고 강제적인 노동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자활사업 등이 최근 EITC 논의와 맞물려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을 유지, 확장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음.
- 수급자 선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제가 설정되어야 함. 더욱 부족한 지점은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파악하는 문제에만 기초법의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고 최저생계비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제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는 적절하게 과제로 설정되었으나 최근 보건복지예산의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제도의 편차가 극심해지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취약해지는 현실에 대한 언급이 없음. 보건복지사업의 집행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전체 거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할 것임.
- 개별급여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현재 개별급여의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현행 자활제도는 공공부조의 조건조항이 아니라 자활지원제도로 독립되어야 함. 즉, 선택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활임금의 실질화, 실질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마련 등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 ILO는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 의료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산재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사회보험의 과제 영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한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마련되어 있고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사회보험을 기존의 4대 사회보험에만 국한함으로써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음.
- 이번 권고안은 4대 사회보험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음. 그러나 이들이 배제된 원인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 평가에 적합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아,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국민연금의 당면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즉 국민연금 재정불안정과 광범위한 사각지대임. 그러나 연금의 재정불안정성은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예정되어 왔던 것임. 즉 처음 국민연금이 실시될 때부터 재정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금 재정고갈문제는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불안정문제를 들어 연금 기여를 인상하고 급여를 감소시키려는 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 수정적립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연금 기여 인상과 급여감소는 불가피함. 그러나 제기되어 있는 인권 권고안에는 연금 재정불안정해소방안이 전혀 제안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기여회피가 가장 큰 문제인데, 현 권고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만이 제기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크레딧(credit)제공 및 근로자 부담분의 국가부담이 제안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각지대 축소방안이라 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만기 가입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어 연금급여수준이 낮은 상황임. 즉 평균적인 연금가입기간이 25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령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감액노령연금을 받아 급여수준이 낮음. 그러나 현 권고안에는 가입기간의 감소 등이 제안되어 있지 않아 급여수준개선행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산재보험 관련한 문제인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당사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는 상황임. 즉 산재보험 적용이 미약한 것은 제도 안에서 미적용 노동자가 많은 때문이기보다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이 더욱 큰 요인임. 정규직 노동자조차 산재신청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직들이 엄격히 금지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는 요원함. 또한 산재신청 절차의 까다로움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임.
- 재해인정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하나 필요성 부분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즉 '선보장후승인체계' 혹은 '결과주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인권의 시각에서 본다면 결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 선보장후승인체계는 재해인정기준의 확대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고용보험의 자발적 실업자가 실업급여수급권을 인정해주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실업자의 절반정도가 자발적 실업자라는 명목으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수급권 인정은 중요함. 그러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 등 짧은 상황이라 아직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현재 한국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상당시간이 시간이 필요함. 그러나 실업급여기간이 짧아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일단 참여해 일정정도 기여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안으로 포괄되지 않는 사각

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즉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비정규노동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제도개선으로는 보험방식에 포괄되지 않음. 게다가 이들 집단은 계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노동시장편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은 낮지만 청년실업률은 높은 상황에 처해있음. 이런 측면에서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등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이미 유럽에서는 실업부조를 도입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이의 간극을 배우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의 확대와 급여수준 인상이 핵심내용임. 현재 한국의 사회보험현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권고안에서 제기되어 있는 방안들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지 못하고 제도의 몇몇 개선안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있음.
- 또한 점차 노동시장과 가족구조 등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 즉 노인인구의 증가, 노동시장유연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높은 이혼률은 기존 사회보험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임. 그러나 이런 권고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아 장단기적인 안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2-3. 노동권

- 사회규약 등을 참조하면 노동권은 크게 범주화하면 △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권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로 나눌 수 있음. 국가인권위가 목표로 삼은 형식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독립항목으로 다루었으나 노동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권 권리는 혼합시켜놓아 권리범주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나누어놓아야 함. 목표2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권 권리의 권리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또한 용어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사용해야 함.

□ 노동할 권리

- 노동할 권리는 인간의 물리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소독원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물론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임. 노동할 권리의 범주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가능 해야 하는 권리 △자의적인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권고안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에 대한 구조조정을 막는 것이 우선적임. 즉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막아야 함.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불안정 노동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안정적 고용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함. 또한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직업능력여를 취득,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일자리 창출관련 공공부문과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만 언급되고 있을 뿐, 일자리 자체의 공

공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즉, 사회적 일자리는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저임금노동자의 확보수단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위해 요청되는 일자리로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도록만 들어져야 할 것임.

- 추가해야 할 핵심추진과제로 실업수당 지급, 자의적인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법제화, 정리해고 요건의 엄격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임.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권리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최저임금,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야 하고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유리하고 공정한 노동조건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함.
- □□핵심추진과제□□에서 최저임금 대상의 확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협상하는 구조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는 구조임. 특히, 한국의 경우 노동권의 보장이 미약하고 정부가 천자본적 입장을 강하게 띠는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고려되어야 함.
- 노동자건강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예방의무 이행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인정, 포괄적인 작업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명시되어야 함. 특히, 최근 노동조건 악화도 노동자건강이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 강도의 강화를 제한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감시나 탄압을 엄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기업연금의 개선과 적용확대는 공공연금과 상호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강제요양종결을 막아야 함
 - 근로감독관 증원에서는 노조의 명예근로감독 역할이 필요함.
 - 추가해야 할 핵심 추진과제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임금의 적정성, 판단주체의 재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가해야 함.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사회권규약에서 권리의 주체가 □□노동자□□로 국한시키지 않은 것은 이 권리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인간의 권리임. 특히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공무원 등 제한당하고 있는 범위에 관한 현실에 주목해야 하고, 민사·형사적으로 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함.
- 최근 사용자의 대항권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이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진단 속에 언급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지적해야 함.

- 핵심추진과제에서 짧은 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파업시 □□대체근로제한□□이 아닌 □□대체근로금지□□로 가는 것이 맞음. 민사책임부과의 완화가 아닌 금기로 가야 함. 핵심추진과제에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특히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되어야 함.
- 핵심 추진과제에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명시화와 범위 축소 등이 추가되어야 함.

2-4 건강권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하여 단지 의뢰서비스에 대한 권리만으로 한정짓지 않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단계로 의뢰서비스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접근성 제고만을 제시하고 있음.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노동,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건강을 주요한 가치로 설정하도록 하는 기본적 인식이 공유되기 위하여 건강권에 대한 풍부한 권리해석이 필요함. 또한 의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마련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또한 건강결과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어야 함. 이번 초안은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건강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엿보이지 않음.
-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제기하고 있는 필요성은 접근성과 질(적절성 quality), 수용성, 이용가능성의 측면에 두루 걸쳐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음. 이미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으며 건강권의 평가는 구조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권리당사자인 집단과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할 것임. 그럴 때에야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들이 매겨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국내 및 국제기준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등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 정책방향이 건강권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 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빈부격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사유화, 산업화 경향을 차단하고 공공적 구조로 바꾸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뿐만 아니라 건강결과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달성하도록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따 2001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보건분야 예산의 비율이 1% 이하이며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 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는 견해를 밝힌 적 있음.

- 핵심추진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달성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의 공공부담이 적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정부와 자본가의 부담을 높이는 것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비추어 정부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임.
- 회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나 가격 인하 및 보험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해야 함. 의약품접근권의 침해는 비단 회귀의약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수약품을 포함하여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의료체계의 인프라 개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자원이 균등하게 배치되고 본인부담금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민간의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상업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음. 보건의료비의 부담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서비스의 공급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일원화된 담당부처를 확립하려는 과제가 무엇을 위한 과제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의로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면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주관부처이며 좀더 포괄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은 모든 부처의 주요과제여야 할 것임. 건강영향은 환경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며 전반적 인권상황, 성인지적 관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담당부처의 일원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음.
- 의료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전산화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환자의 참여는 의로서비스 결정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구조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어야 함.
- 건강권이 특히 침해당하고 있는 계층을 제시하여 정책마련의 근거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스스로 거주민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건강권의 실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지표들을 마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5. 주거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목표는 철거에 국한됨으로 인해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강제철거는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에 대한 가장 극심한 형태의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권고들이 나와 있음. 한국의 경우 여전히 개발독재 시대의 강제철거 관행이 남아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나 주거권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이고 특히 주거 빈곤계층과 홈리스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하는 점 역시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즉, 한국 내 거주민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국가가 보장하여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는 주거권이 지향하는 적절한 주거가, 점유안정성의 확보, 차별성 배제, 접근-이용가능성 보장, 홈리스에 대한 우선적 조치,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확보, 취약계층 확보, 문화적 특성 보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적절한 주거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위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탕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두어 주거권의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필요성과 관련한 현실 진단에서 철거 부분은 적절하게 서술되었음. 하지만 주거권의 보편적 실현을 염두에 두고 현실을 바라본다면 한국의 주거취약계층은 훨씬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 특히,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국가정책의 미비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부담이 모두 개인에게로 지워지고 있으며 주택, 토지의 시장적 성격이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 비추어보더라도 심각하게 높다는 것이 주요하게 지적되어야 함. 이에 따라 주택소유의 편중이 심각하고 빈곤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임.
-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지의 거주민들이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주민동특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탓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으며 노숙인에 대한 정책을 시설의 문제로 대체하고 있는 한계가 보임. 노숙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할 수 있으나 노숙인은 주거살집단으로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주거의 제공이 필요함. 시설의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설개선만으로 노숙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게다가, 노숙인은 홈리스의 일부일 뿐이며 주거불안집단과 주거배제집단을 포함하는 홈리스가 광범위하게 재정의되어야 하며 이들의 주거권 침해가 필요성으로 제기되어야 함.
- 한국의 주거정책은 크게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주관단체로 하며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는 주로 물리적인 주택공급과 건설, 개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현물공급에 관여하며 보건복지부는 홈리스와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 쉼터나 보호소 등 일시적인 주거 제공 등에 책임을 지고 있음. 주관부처가 이렇하다보니 한국 내 거주민의 주거권 실현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주택공급정책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과 괴리를 보이고 있음.
- 헌법과 주택관련법 등에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거주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성문화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거권을 명시하고 정부정책에 있어 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통합부처의 신설을 고려했어야 함. 2001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음.
- 뿐만 아니라 주거권 관련 통합부처는 현재 한국에서의 주거에 대한 소의를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임.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가구구성과 주택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주거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탓에 적절한 주거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의 자가 소유율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

세 자가소유의 주택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지 못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체 거주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재산으로서의 주택 인식이 유난히 높은 한국사회에서 자가소유가 아니더라도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 마련이 요청됨. 즉, 공공적 주택공급과 점유를 기본으로 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핵심 추진과제로 철거와 관련한 과제들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보장□□, □□가수용단지 건설을 통한 순환식 주거개발□□ 등의 구체적인 과제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시급한 과제로 주민등록 등재, 필수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공용화장실 등)의 제공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나 한국의 경우 홈리스가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정책 대상 집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즉, 노숙인 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가 불안정한 임차인, 전지나 전구의 집에 얽혀사는 사람들, 독립이 필요한 여성과 청소년, 식당이나 공장 등의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고시원 등 비공식 숙박시설에서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 등을 파악하고 정책 대상 집단으로 설정해야 함. 또한 홈리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주택제공을 위한 계획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개고를 늘리고 입주자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는 것 등이며 홈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자동갱신권의 도입이나 퇴거금지의 원칙화 등일 것임.

2-6 교육권

□ 권고안 체계 평가

- 목표, 필요성, 국가정책방향, 핵심 추진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함. 예를 들어 필요성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국가 정책방향이나 핵심 추진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실증되어 있음.

□ 방향성 평가

- 한국사회에서 교육권은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규율 재구성 △입시 위주 교육의 전면적 전환(교육목표의 수정)이라는 주요 과제를 갖고 있음.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이란 다시 1)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2)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3)수용 가능한 교육과정 4)문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내용 구성 등으로 구성됨.
- NAP 권고안 초안은 주로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쪽에 무게를 두고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보니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실증되어 있음. 나아가 학습권의 경우에도 ‘기회의 평등’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변화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음.

여성, 성소수자, 가족형태, 장애, 노동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교과서의 차별적 내용을 시정하고 인권 관련 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예: 교과서 개정 절차의 전면적 수정)을 개발, 제시해야 할 것임.

□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평가

- 권고안 초안은 교육기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과제로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을 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음. 경쟁구도의 완화는 교육 목표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함.
-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무상교육’을 위한 로드맵 제시는 반드시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되어야 함.
- 전반적으로 교육권의 향유 주체를 어린이·청소년에 한정하여 정책과제를 뽑아내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음.
- 징계, 체벌 관련 규정 정비, 학생 참여권 보장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학생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함. 예를 들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의 재구성, 국가수준의 학생인권지침 공포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임.
- 학생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는 ‘교육권’ 부문에 포함시키기보다 ‘정보인권’ 부문이나 ‘어린이·청소년’ 부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내용상 적합하다고 판단됨.
- 실업계고, 전년대 교육의 과정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권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관련 정부당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현장실습생들이 저임금·불안정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권고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응 학생’이라는 개념은 부적절함. 이 개념은 정규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

2-7. 문화권

- 우선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 문화관광부 산하기구가 발표한 □□문화현장□□(초)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련된 논의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무성의. 인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문화권의 위상을 인권위 스스로 합의하고 있는지, 문화권의 정립을 위한 인권위 내부의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음.
- “목표 : 문화권의 위상 정립 및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시민참여적 문화를 활성화시켜 문화적 향유권을 증진함”은 인권의 영역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받는 문화권의 위상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듯하나, 문화권의 기본원칙 수립을 위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포괄적 수준의 합의조차 전제되어 있지 못함. 또한 □□시민□□의 이를 안락에서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의 문화권 확보를 좀 더 우선적 목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문화물 삶의 총체적 양식을 아우르는 개념이자 창작표현의 결과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업무에 들 때, □□향유권의 증진□□을 문화권 목표로 설정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려움. 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보장□□이란 목표에 걸맞게, 문화의 창작을 특정인의 영역으로 가두거나 침해 발생 시 대응하는 소극적 권리로 간주하는 틀을 넘어서기 위해, 모든 인간이 문화적 표현, 창작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부분에서 문화권의 필요성을 표현의 자유와 차별의 존재로 한정짓고 있는데, 좀 더 다각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다양성을 파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의 무의식을 조종하는 문화자본에 대한 저작권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함. 문화가 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간주되면서, 상업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성 유지되면서 조장되는 사회 왜곡과 획일성의 위험에 대한 환기가 필요함. 또한 계층간 문화권 확보를 위한 기회 부여의 격차가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소수자가 문화권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문화권의 확보 여부가 인권 일반의 침해 정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국내 및 국제 기준'에서 제시된 것 외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5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등의 제시가 필요함.
- '국가정책방향'에서 추상적인 수준의 당위적 방향만을 제시하여,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창작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심의기준과 범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함. 또한 한미투자협정에 대항한 스크린 쿼터 투쟁으로 대변되는 문화를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귀속시키려는 정책일반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져야 함.
- '핵심 추진과제'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함.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핵심 추진 과제는 이미 문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환경(올10월 공포)에 따른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과 일맥상통한 듯함. 이에 현재 관련 부처에서 진행된 정책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언. 개입하려는 노력이 요원함.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빈민, 여성, 장애인 등으로 확대 지목하여야 함. 또한 기존 방송매체문화나 문화정책, 행정 등의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소수자에 의한 새로운 문화 영역의 생성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령 방송매체문화 영역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직접 제작, 운영하는 노동 채널의 신설 등이 가능함.
- 특별히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세계인권선언 27조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 a) b) c)'는 한편에서는 저작권(좀 더 넓게는 지적재산권),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기에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은 권리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원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 등이 그것임.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식 문화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며, 그 배후에는 거대 지식 문화 자본이 존재함.

으로 한 선진국들이며, 그 배후에는 거대 지식 문화 자본이 존재함.

-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표출되고 있음. 지식 문화 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들이 독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우 문화적 종속과 부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나친 지식 독점의 강화는 새로운 창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이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충돌을 빚고 있음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는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이 무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6절 저작권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전송권에 대한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공정 이용의 여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그 결과 인터넷 상 비영리 공동체나 개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통 행위(예를 들어, 어떤 저작물에 대해 비평하거나 토론하는 등)마저 저작권의 통제를 받고 있음.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임을 인식하여야 함. 첫째,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음.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로 인해 시장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함.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혁명적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를 제약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둘째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이 용이해짐에 따라, 가치 있는 2차 지식 생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 환경이 변화하였음.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해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식 문화의 생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 문화 정책이 필요함.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저작권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었음. 2000년 전송권의 신설, 2003년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예외 규정 (디지털 도서관의 활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2004년 현재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등 이와 같은 기존의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함.

2-8. 환경권

- 주로 개발 진행과정 중 야기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을 위한 환경 혹은 환경과 유리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하지 못한 채, 개발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책방향을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제안하며, 공급과 수요라는 경제적 작동 원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현재의 환경권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요시하는 개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 그 결과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토지와 물, 대기 등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쾌적하게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개발 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권고안 초안은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접근을 증시하는 개발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또한 환경권을 자연환경의 파괴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재 경제개발중심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환경권을 접근할 때, 경제논리의 개발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제반 권리항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때 □□발전에 관한 권리□□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함.
- 현실 진단
 - 새만금사업, 핵폐기장 건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등 일련의 정부의 개발사업이 자연환경 훼손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 난개발로 대표되는 택지개발사업, 유해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지방정부들이 서로 유치겠다고 혈안인 점.
 - 팽택미군기지확장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문제
 - 개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의 문제, 정책계획에서 시행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환경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나, 민간기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음. 오히려 개발주체들에게 환경면허부를 주는 것으로 약용, 남용되고 있음.
 - 민주주의의 원칙을 절차적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는 방사선편기장시설 등 유해한 시설 건설을 놓고 지방정부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겠다는 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환경권
 - 환경권은 국제인권의 권리항목들, 가령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을 포괄하는, 확대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함. 또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로서 접근되어야 함.
 - 발전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발전권에서는 "사람은 발전의 중심 주체이며, 발전권의 적극적인 수혜자이자 행위자여야 한다."(2조1항), "국가는...인민의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한 적절한 국가발전정책을 구성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2조3항), "국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6조3항)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경제논리 중심의 개발사업과 정책들이며, 사람을 발전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과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참여(참여할 권리, 정보에의 접근권 등)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상황임.
- 특히나 경제논리 중심의 사업과 정책들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환경권을 자연환경보호를 넘어선 확대된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발전권과 리우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정책방향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가이드라인을 만들기 : 경제논리 중심의 환경정책과 사업방식을 폐기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의 갈등 또는 담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우원칙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지역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류의 자원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책무 등과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권과 정보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와함께 국제인권기준에서 후퇴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자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여야 함).
 -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정보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 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충분히 예측한 바탕 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작성, 협의, 사후관리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자료화하고, 정기정책평가를 실시, 또한 각 보호지역, 백두대간, 생태계 민감지역,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강화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만을 갖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투표제-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3.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협력 체제 구축

□ 인권교육 강화 관련

○ 방향성 평가

인권교육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뽑아놓고 있음.

○ 현실 진단 평가

국가인권위가 실시했던 인권교육 관련 국민의식조사의 결과, 인권단체들이 17대 국회에 제시한 인권과제 등을 소개하면서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있음. 그러나

‘인권교육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음. 단지 인권교육 관련 의식조사의 결과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 분야별 인권교육의 현실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향후 과제가 충실히 뽑혔는지를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임.

○ 국제기준과 국제적 흐름

주요 인권조약의 규정, 각 조약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인권교육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음. 그러나 개별 조항과 권고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러한 권고가 얼마나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 평가는 인권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는 항목에 포함시켜 국제기구로부터의 권고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평가

- 학교 부문, 공공부문, 시민사회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잘 뽑어놓았음. 그러나 권고안에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부문별 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부문간, 부문별 핵심 전략과 추진과제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들은 향후 5년간 모두 시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의 과제가 다른 과제의 선결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음. 따라서 국제기준과 국제기구로부터의 권고를 종합하여 한국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인권교육에서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인권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무원 연수과정 내에서도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과제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향과 원칙 확립, 공무원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과 교수진 양성, 공무원 내부의 직무 차이를 반영한 인권교육 내용의 세분화 등의 과제가 먼저 달성되어야 할 것임. 또 사회진출 예비단계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교수진 양성이 급선무일 것임. 이렇듯 선후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원칙에서 벗어난 교육이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형식화되어 장식용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할 때에도 공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의 공무원 인권교육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유엔인권교육10년’에서는 법집행 공무원, 인권분야 종사자들(의료인,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권교육이 활성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나아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부적인 과제들, 예를 들어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의 구체적 내용을 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단위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요약하자면, 인권교육 부문의 NAP 권고안 초안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정책 방향은 제시하고, 여러 과제 중 핵심 추진과제를 좀더 전략적·구체적으로 선택, 제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5년간을 염두에 두고 핵심 추진과제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편이 실제 NAP를 수립

하게 될 정부부처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의 경우, 사회적 논쟁이 매우 격렬한 부문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따라서 단지 교육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과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학생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교육부·국가인권위·인권/교육단체 합동 테이블 구성을 함께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III부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과거청산

1) 과거청산 영역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

- 우리역사는 의제와 분단, 독재 정권 등 반이성적 시기를 지나오며, 권력에 의해 집단학살과 의문의 죽음,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 권력과 가해자들에 의해 오랜기간 은폐되거나 조작되어졌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 피해사 및 유가족들의 노력에 의해 미흡하나마 알려지게 되었으며,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적 해결의 과정을 밟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유린한 사건의 진실과 이러한 범죄행위가 가능했던 당시의 법과제도를 상당부분 그대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청산은 단순한 한 사건의 해결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시혜가 아니다. 반 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영역에서의 역사운동이다.

-또한, 제발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가해를 자행한 집단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과정을 통해 사회 각 부문 영역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한시적 과거청산 기구가 설치되더라도 인권NAP 권고안에서 과거청산 관련 영역은 꼭 필요하다.

2) 과거청산

(1) 서론

○ 과거청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성과 화해’를 내걸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와 전쟁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인종차별에 대한 사과,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들은 인류역사에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반성이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의 과정이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들뿐 아니라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고 이어질 것인지를 밝히는 노력이며 사회와 국가가 지향하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과거청산은 사회 전반의 인권신장을 위해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과정에
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유린했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당사자와 그 유
족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뿐만 아니라 당시 생명권을 유린할 수 있도록 한
법과 제도 및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

(2) 국제 기준

- 국제 사회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국제 인권법을 통해 과거청산의 범주
와 과정을 선정하고 국가는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음.4)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하도록 함.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 1)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2)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 3)책임자의 처벌
- 4)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5)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6)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 7)다음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 조치
 - ①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통제하에 두는 일
 - ②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 ③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 ④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 ⑤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 ⑥보안군과 법 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 1968년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을
채택하여 시효없는 처벌을 명문화함. 시효 부적용 협약 1조는 '범행의 시점을
묻지 않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아직 이 협약에 미가입한 상태임.

4)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4/Sub.2.
pp.22-23.

(3)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 목표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통해 국민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필요성

-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조사되고, 권
위주의적 통치 시기 고문과 사법부의 판단오류로 인해 조작되었음을 제기하는
사건들의 진실규명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집단학살 및 고문등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매우 짧음. 국가 권
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임.
-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로 활동을 방해하
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처벌 규
정이 없음.
- 각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 문서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이
며, 대상이 넓음. 과거 의문사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
- 국가 폭력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경우 진상조사 되더라도 소멸
시효로 인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국가 정책방향

- 반인권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은폐되거나 조작된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함.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기억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임.

□ 핵심추진 과제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조사범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 결코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 억울하게 판결된 사건들이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
를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안을 권고함.
- 우선 미가입 되어 있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소시효배제 입법 관련 법제정이 되도록
함.

-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로 활동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도록 함.
-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보 공개요청시 국가기관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특별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정보 비공개 대상 문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명문화하며, 공안기관 문서목록의 공개질차를 마련함. 자료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자료 공개등을 의무화 함.
- 국가 폭력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입법 조치가 마련되도록 함.

(4) 제발방지 정책

□ 목표

- 권위주의 통치시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이를 악용했던 각 기관들의 운용했던 기관들의 반성과 제도적 제발방지 대책 마련

□ 필요성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법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석을 잘못했던 관행들을 바로 잡음.
- 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들은 올바른 사인확인제나 총기 관련 전문가들이 없으면서 의문사로 규정된 경우도 많음.
- 반성문 제출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보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나치독일, 구소련, 구동독의 정보기관들이었으며, 이들은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대표적 사례임. 기무 부대는 군관련 정보수집에 한정해야 함.
- 카투사제도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 한미간 졸속으로 이루어진 협력체계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 관행이라는 이유로 미군부대에 법적 근거없이 파견되어 있는 카투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국가 정책방향

-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인권적 국민기본 침해가 가능했던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신장이 되도록 함.

□ 핵심추진 과제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인확인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 된

'사인확인 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 군의문사의 경우 총기, 화약, 문서 등의 감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들이 없으면서 유족들의 불신과 군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사망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반성문 제출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과정의 고문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권고함.
-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무사는 올바른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정보수집에 한정하도록 함.
- 카투사제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법적 지휘권이 마련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해소하도록 함.

(5) 명예회복 및 화해 조치

□ 목표

- 올바른 진실규명과 이에 바탕을 둔 반성과 화해를 통해 피해 당사자에게는 명예회복 및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고 후세에 제대로 기억되도록 하여 함께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함.

□ 필요성

- 진상규명된 사실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
-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파기를 통해 무효와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 것임.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하에서 즉결처분재판소에서 재판된 판결들에 대해 1998년 '나치 불법 판결 청산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무효화하기도 함.
- 기념과 예도를 위한 위령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과거사재단 설립 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함.
- 진실규명과 알리는 과정 외에 국가 배상이나 집단 보상등 실질적 후속조치가 따라야 함.
- 경제논리로 인해 자칫 배제되기 쉬운 과거청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역사교육 및 인권교육과정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 정책방향

- 중,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미래세대에 기록을 통해 기억되도록 함.

□ 핵심추진 과제

-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서의 과거청산작업과 독일 등 해외 사례들, 과거사위를 통해 진상규명된 역사적 사실들을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지원함.
- 진상규명 결과 불법판결 된 사건들이 파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특별재심 의 폭을 넓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후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국가 정책 권고